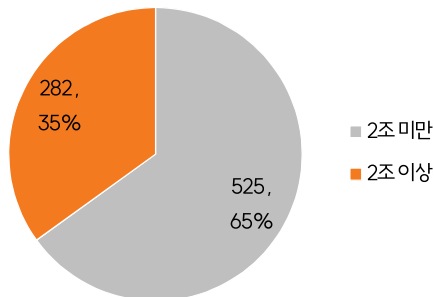


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, 집중투표제 의무 실시

2026-09-0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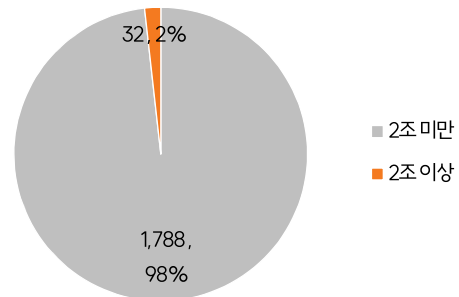
- 지난해 상법개정에 따라 9월10일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배제가 금지되었음
- 한번의 주총에서 여러 명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선임할 이사수 X 보유주식수로 의결권 수를 정하고 이를 한 후보에 몰아주어 이사회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
-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% 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청구로 집중투표제 실시
- 그 동안 많은 기업이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해 왔으나, 앞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집중투표제 실시를 통해 소수주주가 추천한 이사가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열린만큼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
- 반면 기업 입장에서선 선임하는 이사의 수와 선임시기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
-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도 기존 1명에서 최소 2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수주주권 강화 효과 기대

코스피 내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 비율



자료: Quatiwise, SK증권
주: 26년 2분기말 기준

코스닥 내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 비율



자료: Quatiwise, SK증권
주: 26년 2분기말 기준

상법개정안 주요 내용과 시행 시기

구분	내용	시행시기
1차 상법개정	이사의 주주총실의무(제382조의3 제1항·제2항)	25년 7월 22일
	독립이사 제도 도입(제542조의8 제1항)	26년 7월 23일
	감사위원 선임 시 3%를 확대(제542조의12 제4항 및 제7항)	26년 7월 23일
	전자주주총회 도입(제364조 제1·2항, 제368조 제2항)	27년 1월 1일
2차 상법개정	집중투표제 의무화(제542조의7 제3항)	26년 9월 10일
	감사위원 분리선출(제542조의12 제2항)	26년 9월 10일
3차 상법개정	자기주식 1년 내 소각(제341조의4 제1항)	26년 3월 6일

자료: 법제처, SK증권

COMPLIANCE NOTICE

작성(최관순)은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중독별 투자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투자 판단 3단계(6개월/1년) 15% 이상 > 매수 / -15% ~ 15% > 중립 / -15% 미만 > 매도